

연번 1번은 자료 6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등포동 620-4호 토지로써 도로개설공사 후의 자투리 땅입니다. 면적은 약 0.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2번부터 4번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면상 연번 2번의 매수인은 620-133호 토지주로서 자기 토지 접속 경계상의 620-111호 구유지 중에서 약 0.9평을 매수신청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3번은 매수인이 620-108호 소유주로서 자기 토지 접속 경계상의 620-369 구유지중에서 6㎡중 4㎡와 620-111호 구유지 33㎡중 6㎡로 총 10㎡를 신청했습니다.

연번 4번 매수인은 620-109호 토지주로서 자기 토지접속 경계상의 620-369호 토지 6㎡중 2㎡를 매수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본 구유지 2필지는 연번 2부터 연번 4 매수인 토지와 길게 접속되어 있는 도로개설공사 후의 자투리 이웃 토지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개설된 도로면과 2~3m의 표고차가 높게 위치한 토지로 보존 가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본건 토지는 지난번에 매각동의 요청을 했다가 민원이 야기할 것을 예상해서 보류했다가 다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번 5번은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길2동 192-216호상 도로개설공사 후 자투리 토지입니다. 면적은 약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6번은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신길3동 269-4호상에 위치한 도로개설공사 후 자투리 토지로써 16㎡가 되겠습니다.

연번 7번은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대림1동 906-112호상의 토지로 20년 이상 건물담장안에 장기간 점유하고 있던 그런 토지입니다. 도면상 사각을 이루고 있어서 가각정리를 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도로 흐름상으로도 본 건 토지 경계 부분이 특별히 좁아지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 매각대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매각대상 모두는 민원인의 고충과 재산 관리적 측면 그리고 보존 가치의 타당성 여부,

매각 재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해서 매각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민원의 고충 해소는 물론 區 재정 수입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種求 수고 하셨습니다.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專門委員 趙大顯 '94年度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 '94.6.7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4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구유지 6필지 64㎡를 7인에게 매각코자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매각코자 하는 내용을 보면, 단독 필지 3필지 31㎡와 단독 3필지 126㎡중 33㎡를 분할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상정안은 「동의」사항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1항에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건은 「의결」 안건으로 정정하고 처리되어야 할 의안이라고 사료됨.
2.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취득코자 하는 재산과 매각코자 하는 재산을 매년 계획 수립하고 의회의결을 얻어 추진하는 것으로 '94.1.19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된 것은 취득토지 8필지 1090.7㎡ 건물 315.61㎡이고 매각은 토지 1필지 3㎡뿐이며, 현재까지 매각은 매수신청 있을 때에만 산발적으로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처리해 왔고, 이번 상정된 의안 자체도 매수신청에 의거, 신청된 필지에 국한하여 매각 처리하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은 '94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설득력은 약하다고 사료됨.
3. 구유재산관리계획수립에 있어, 잠종재산 전체를 사전에 현황파악하여 장래의 공물로써 공공용 재산이나 보존재산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과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매각이 필요한 재산은 사전에 매각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여야지 현재와 같이

매수 신청을 기다리고 매수 신청이 있어야만 신청 토지 매각여부를 검토하므로써, 매수신청이 있어도 적기 매각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느라 매각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구 재정세입 계획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94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정비, 조속히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일괄상정하여 의결을 얻어 계획적이고, 투명성과 신속성있는 매각 사무가 집행되어야 할 것임.

4. 금회 상정된 '94구유재산관리계획의변경동의(안)은 廣義적인 의미에서는 계획변경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협의적·법률적·행정적 의미에서는 「변경이란 용어는 당초 결정사항을 전제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금회상정안은 '94구유재산관리계획의 추가계획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94구유재산관리계획의 추가계획으로 보고, 구청장이 매각요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결과와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 의결 요청 토지실태와 검토의견

| 연 번 | 재 산 의 표 시 | | | | 현장여건 및 실태 | 검 토 의 견 |
|-----|-----------|--------------------|---------|---------------------|--|--|
|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적(m ²) | | |
| 1 | 영등포1동 | 620-4 | 대지 | 1 | · B=12m도로에 접함. · 매각 동의요청 토지와 연결한 토지 · 턱파기 공사중에 있음 | · 매각의결 요함 ※이유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 없음. |
| 2 | 〃 | 620-111 | 대지 | 3/33 | B=12m도로에 접함 · 현 도로지면에서 2m이상 높이 절개지 형태 | 위와같음 |
| 3 | 〃 | 620-369 620-111 | 대지 〃 | 4/6 6/33 | 위와같음 | 위와같음 |
| 4 | 〃 | 620-369 | 대지 | 2/6 | 위와같음 | 위와같음 |
| 5 | 신길2동 | 192-216 | 대지 | 14 | · B=4m도로에 접함 · 신길2동 192-123 건축주가 담장설치 무단점유, 앞마당으 로 사용 | 위와같음 |
| 6 | 신길3동 | 269-4 | 대지 | 16 | · B=6m도로에 접함 · 신길3동 269-13토지와 연결 나대지 상태 | 위와같음 |
| 7 | 대림1동 | 906-112 | 대지 | 18/48 | · B=8-10m도로에 한함 · 대림동 906-69토지주 담장 설치 무단점유 정원으로 사 용 | 매각의결 유보 |

※7번 토지 매각의결 유보 사유

- ①가각 정리하여 도로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봄
- ②48m²는 현재 도로로 일부 이용되고 있고, 매각요자 하는 토지와 잔여지로 3등분되나 잔여지는 규모 형상으로 보아 906-51토지주 측면에서 효용가치가 적어 향후 매각이 어렵다고 보여짐.
- ③토지전체를 보고 검토할 때 특정인의 사익측면 보다는 공익차원에서 토지 48m²전체를 도로로 활용함이 도로선형상 바람직해 심도있는 재검토 요함.